

담배소매인 직권취소 및 지정 신청 공고

1. 「담배사업법」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소매인명	상 호	소 재 지	지정취소일
박**	묵어	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65, 115호	2025. 7. 10.

2.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신청기간 : 2025. 7. 10. ~ 2025. 7. 18. 18:00 (우편불가)

나. 접수 및 문의처 : 서구청 경제정책과 (☎032-560-3262)

다. 접수서류

- 1)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.
- 2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- 3)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(임대차계약서, 신탁회사 소유일 경우 신탁원부, 동의서 등) 1부.
- 4)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(국가유공자 증명서류,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) 1부.
※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: 주민등록등본(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

라. 참고사항 (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9항, 제10항)

- 1)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
- 2)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(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우선하여 지정
- 3) 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
(다만,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.)

마. 유의사항 : 추첨 시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참가

- * 단, 대리인이 참가하는 경우 위임인(미참가자)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원본 및 위임장 제출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제출
- * 신청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, 추첨에 참가하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함.

2025. 7. 1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